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 등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해양수산부령 제44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양폐기물

- 가. 해역·수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 다. 수거 및 처분 방법

## 2. 해양오염퇴적물

- 가. 해역·수역별 분포 현황
-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 다. 정화가 필요한 구역의 범위 및 정화 대상 해양오염퇴적물의 물량
- 라. 정화 방법
- 마. 정화를 거친 퇴적물의 최종 처분 방법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문헌·자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 4 제2호4)부터 15)까지 및 73)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같은 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적 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해역 및 지정기간

3.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4. 배출 허용량

5. 배출방법

6. 지정조건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검사 대행기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1항제3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폐기물의 발생공정
  4. 폐기물의 배출기간
  5.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할 업체
  6. 배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폐기물의 성분·농도 측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배출 일시·장소

2. 배출 원인

3.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량

4. 배출 해역의 현황

5.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조사 및 수거·정화 기간

2.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 및 수거·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매립·고립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매립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매립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2. 고립의 경우: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리기준 중 제1기준

제14조(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저면으로부터 800 미터 이상의 깊이에 형성된 공극(孔隙: 기체나 액체 등으로 메워질 수 있는 작은 빈 공간을 말한다)이 많은 암석층으로서 상부가 진흙 등으로 덮여 있어 외부로의 물질 이동이 차단되는 구조
2. 가스·원유 등의 광물 채굴을 완료하고 남은 저류층[貯溜層: 공극이 천연가스, 원유 등의 유체(流體)로 채워져 있는 다공질 투수성의 지층을 말한다]의 빈 공간
3.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질 구조

②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6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고려할 것
2. 해안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3. 어업·관광·해운 등 해역의 이용 현황에 따라 수거 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입 장비 및

인력을 배분할 것

4. 해안폐기물의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기상·해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거하고, 수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해안폐기물에 부착되거나 함유된 오염물질이 해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안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7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처리해야 한다.

1. 부유폐기물의 분포 현황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반기별로 부유폐기물의 수거·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청항선(淸港船: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작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어장청소선 등 부유폐기물의 수거에 적합한 선박을 활용할 것
4. 수거·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부유폐기물의 확산을 방지할 것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 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유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 공단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처리해야 한다.

1. 침적폐기물의 분포 현황과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4. 수거·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수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적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19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공단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해 청항선·어항청소선 등의 전용 수거선박이나 폐기물 집하장 등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수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
2.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해 개선제 등을 투입하거나 피복(被覆: 오염되지 않은 물질로 덮는 것을 말한다)하는 조치

3.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2.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정화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

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2.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3. 정화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화 해역의 위치
  2. 정화 면적 및 물량
  3. 정화 방법
  4. 정화 기간
  5.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해 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정화사업 구역이 재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물질의 유입 차단을 위한 환경개선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용 대상물질의 종류 및 용도
2. 활용 대상물질의 양

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준설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준설물질을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설물질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배출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다.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 바.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 라.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다. 별표 4 제3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 라.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설비 및 장비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대표자(법 제2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능력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선박·설비 및 장비 등
4. 운반 폐기물의 종류, 적재지 및 배출예정 해역
5. 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6.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경우: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까지
3. 제1항제5호의 경우: 변경된 저장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실적서에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폐기물의 보관·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할 것
3. 누구든지 저장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 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않도록 보관할 것
5.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제29조(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제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리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3.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5.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2. 양도·양수, 상속,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2.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 등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
5. 해양오염퇴적물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 실적
2.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실적
3.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현황 및 해양폐기물관리업자별 폐기물 등의 처리 실적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배출·수거·정화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

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5호				
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등록취소			
나)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우		경고	경고	등록취소	
다)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영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폐기물

[mg/kg, 건중량(乾重量)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2. 영 별표 1 제1호다목의 폐기물

(mg/kg,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나프탈렌	4	0.8
페난트렌	5	1
안트라센	4	0.8
벤조(a)피렌	4.5	0.9
플루오란텐	10	2.5
벤조(a)안트라센	5	1
벤조(b)플루오란텐	4	0.8

## 3.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

(mg/kg,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180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 비고

- 위 표의 제1기준 및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제1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를 거쳐서 배출해야 한다.
- 위 표에서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별표 2]

##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

폐기물의 종류	배출해역	배출방법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한 것	갑해역 전역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의 폐기물	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폐기물	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및 동해 정해역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영 별표 1 제2호의 폐기물	동해 병해역, 서해 병해역, 정해역 전역 및 무해역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비고

1.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시멘트는 수경성(水硬性) 시멘트를 사용할 것
  - 나. 시멘트는 콘크리트 1m<sup>3</sup>당 150kg 이상을 혼합하고 균질하게 섞을 것
  - 다.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굳힌 후 1축의 압축강도가 100kg/cm<sup>2</sup> 이상일 것
  - 라.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1) 부피와 1면의 표면적 비가 5 이상일 것
    - 2)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 이하일 것
    - 3) 최소변의 길이는 30cm 이상일 것
2. 배출해역은 영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3.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폐기물의 농도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해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평균 대수속도(對水速度)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
  - 다.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닐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하여 배출할 것
  - 라.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 가공잔재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집중식 처리방법에 따른 배출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
  - 나.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않을 것
  - 다. 가루 상태로 배출하지 않을 것
  - 라.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않도록 처리할 것

## [별표 3]

##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

## 1. 폐기물의 매립 방법 및 절차

- 가.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자는 호안시설(매립재 등이 바깥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가두어 두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선박에 의하여 호안의 안쪽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을 종료할 때까지 선박의 항해구간에 한정하여 호안시설 대신에 수질오염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상징수(上澄水: 오염물질을 가라앉힌 윗부분의 맑은 물을 말한다)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부유물질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 이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유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폐기물의 고립 방법 및 절차

- 가. 폐기물을 고립하려는 자는 대상지역이 폐기물을 고립하기에 적합한지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 나. 폐기물을 고립할 때에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물질을 덮는다.
- 다. 폐기물을 고립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고립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유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별표 4]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

## 1. 폐기물해양배출업

항목		기준			
폐 기 물 운 반 선	소유 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척수	1척 이상	
	요건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각 항해구역에서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 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일 것			
	설 비	공통사항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질·상태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 중 적절한 것을 갖추어 것		
		하역설비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 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 밸브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인 것으로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								
	선저개폐문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 밖의 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저장되는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針路) 등의 항행정보와 연계하여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저개폐문)의 개폐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조	화물창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창구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준설토사 또는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화물창에 평형수(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저장 시설	소유 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출 것								
	규모	주된 적재지(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대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m³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소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m³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 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조 및 설비기준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구조 및 설비 기준	<table border="1"> <tr> <td>안전 기준</td> <td>철재 구조물</td> <td>「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중 IV, V, VI, VII, VIII, XII, XIII, XIV를 준용할 것</td> </tr> <tr> <td></td> <td>콘크리트 구조물</td> <td>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td> </tr> <tr> <td></td> <td>부선</td> <td>「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을 것</td> </tr> </table>	안전 기준	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중 IV, V, VI, VII, VIII, XII, XIII, XIV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부선
안전 기준	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 중 IV, V, VI, VII, VIII, XII, XIII, XIV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부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을 것								

## 비고

1. 준설토사·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않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싣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 1. 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는 폐기물해양배출량의 감소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2. 해양폐기물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 폐기물 수거선	소유 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원치	20mm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깎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 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그 밖의 사항		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 비고

1.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을 말하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면적으로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통풍구·굴뚝·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원치”(winch)란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말한다.
  4. “깎로스”(gallows)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해양폐기물의 인양(引揚)을 쉽게 하기 위해 뱃전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5.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6.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 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탑재된 후 크레인 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해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7. 해양폐기물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설비 또는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나. 해양폐기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항목	기준
선박 및 장비	가. 다음의 수거선 중 1종 이상을 소유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펌프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양수량: 시간당 300세제곱미터 이상</li> <li>나) 유량계, 밀도계 및 유량과 밀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각 1대 이상</li> </ol> </li> <li>2) 밀폐형 그랩(grab)식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 56킬로와트 이상)</li> <li>3) 밀폐형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li> <li>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지정 등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적용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선박</li> </ol> 나. 양묘선(닷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 설비가 있는 선박으로서 100마력 이상일 것) 1척 이상을 소유할 것
그 밖의 사항	사무실(등록지역에 소재할 것)

## 비고

1. 수거선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때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수거선 중 펌프선의 펌프는 진공흡입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3. 수거선 중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굴착기는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 되어야 한다.
4. 수거선 중 밀폐형 그랩(grab)식 수거선과 밀폐형 버킷이 장착된 굴착기형 수거선의 밀 폐형 그랩(grab)과 밀폐형 버킷의 개폐부는 고무패킹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재질이 설치되어, 닫힌 상태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이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 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위 표의 장비 및 선박은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가 해양오염퇴 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수거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 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가.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거량을 늘리거나 수거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 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 하는 경우
  - 나.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중 소유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 업무의 수행이 곤란 한 경우(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별표 5]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 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바.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 횟수는 선박별로 합산한다.

## 2. 개별기준

###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가)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나) 저장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다) 폐기물운반선이 없게 된 경우		등록취소			
라) 폐기물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운반선 사용정지 1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6개월

마)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		운반선 사용정지 1개월 경고	운반선 사용정지 3개월 경고	운반선 사용정지 6개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가) 폐기물 보관·관리 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저장시설사 용정지 10일	저장시설사 용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나) 그 밖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나. 해양폐기물수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선박,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다) 등록하지 않은 해양폐기물수거선 또는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선박,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다) 등록하지 않은 선박·설비 및 장비를 사용하여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별표 6]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나목의 자격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가. 양방향 음파탐사기(Side Scan Sonar) 나. 폐기물인양틀(폭 1m 이상, 무게 100kg 이상) 다. 잠수 및 수중촬영장비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p> <p>나.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잠수산업기사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동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라.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현존량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p>
--	--

##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나목의 자격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p> <p>나.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동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가. 시설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퇴적물의 오염도를 검사할 수 있는 면적 120㎡ 이상의 실험실을 갖출 것</p> <p>나. 장비기준: 다음의 실험장비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적물 시료(표층 및 주상퇴적물 시료) 채취기</li> <li>2) 흡후드 및 클린벤치</li> <li>3) 건조기</li> <li>4) 산분해장치(마이크로웨이브 또는 가열판)</li> <li>5) 원심분리기</li> <li>6) 원자흡광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li> <li>7) 수은분석기</li> <li>8) 시료 추출 및 정제장치</li> <li>9) 시료 농축기</li> <li>10)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기(GC-MASS 또는 GC-MSD)</li> <li>11) 초순수 제조장치</li> <li>1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li> </ol>

## 3. 해양배출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나목의 자격 중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생태독성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태독성시험 담당자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 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p> <p>나.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또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동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가. 시설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항목: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는 면적 120㎡ 이상의 실험실을 갖출 것</li> <li>2) 생태독성시험항목: 생태독성시험 전용실험실을 갖출 것</li> </ol> <p>나. 장비기준: 다음의 기본장비 및 분야별 실험장비는 각 1대 이상 갖출 것. 다만, 생태독성시험항목만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본장비 중 바), 아), 자), 타)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장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료냉장보관고(4℃ 이하, 용량합계 1,000ℓ 이상)</li> <li>나) 순수증류수 제조장치(18MΩ/cm 이상)</li> <li>다) 데시케이터(항습 유지)</li> <li>라) 냉동고(-20℃ 이하 냉동)</li> <li>마) 건조기(100℃ 이상)</li> <li>바) 회화로(450℃ 이상)</li> <li>사) 화학분석용 후드(2대 이상)</li> <li>아) 회전식 증발농축기</li> <li>자) 동결건조기(-60℃ 이하)</li> <li>차) 자석교반기(회전교반 가능)</li> <li>카) 전자저울(0.1mg 이하의 무게 측량이 가능한 것)</li> <li>타) 질소농축장치</li> <li>파) 수평형 진탕기(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기구)</li> <li>하) 수직형 또는 회전형 진탕기</li> </ol> </li> <li>2) 일반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안증류장치 세트</li> <li>나) 페놀증류장치 세트</li> <li>다)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자동용매추출기</li> <li>라) 가열판 또는 초단파 시료분해기</li> <li>마) 분광광도계</li> </ol> </li> </ol>

- 바)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 사) 수은 환원기화장치 또는 수은분석기
- 아)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GC)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기
- 3) 생태독성시험항목
- 가) 마이크로톡스, 엔 톡스(N-tox), 루민스톡스(Luminstox) 등 이와 동등 이상의 해양성 박테리아 발광도 측정장비
- 나) 고속원심분리기
- 다) 저서성 단각류(底棲性 端脚類: 바다의 밑바닥에 사는 옆새우 등과 같은 작은 절지동물을 말한다) 배양기(내부 램프, 폭기장치를 갖추고, 내부용량이 700L 이상인 것)
- 라) 저서성 단각류 해수 여과장치, 저장용기(60L 이상) 또는 해수 공급계약서
- 마) 수질측정기(암모니아, 온도, 염분, pH, 용존산소)
- 바) 표준채(300, 500 $\mu$ m)
- 사)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스코프 확대장치 또는 일반 확대경(3배율 이상)

## [별표 7]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6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조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폐기물 해양배출 [ ] 최초 신고서 [ ]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b>접수번호</b>	<b>접수일시</b>	<b>처리기간</b> 최초신고 시 15일 변경신고 시 5일(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15일)
-------------	-------------	--

<b>신고인</b>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small>※ 법인·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small>
	업종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폐기물 종류(형태)	폐기물 성분	월평균 배출량 (무게, 부피)	배출 위탁업체명	배출기간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m <sup>3</sup> )
<b>신고 내용</b>			kg m <sup>3</sup>				
	폐기물의 오염도 (mg/l)	종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총 질소 (T-N)	총 인 (T-P)	함수율(%)
		검사방법					
	배출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최초신고 시 가.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나.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 1부(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2. 변경신고 시 가.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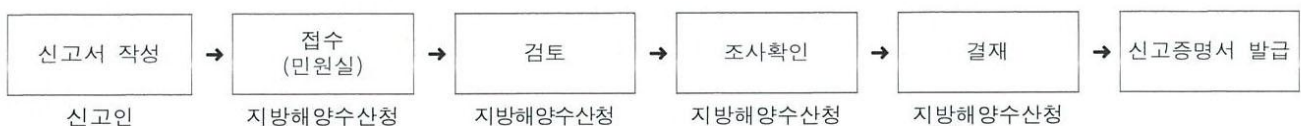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폐기물 종류(형태)” 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폐기물의 형태는 액상 또는 고상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폐기물 성분” 란은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예: 굴 껍데기, 갈치젓갈 가공 잔재물 등)을 적습니다.
3. “배출해역” 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출자	① 상호(명칭)
	② 업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 결과	⑥ 해양배출 사유
	⑦ 향후 육상처리계획
검토서 공개 동의 여부	⑧ 동의합니다.                    [ ] 당사자                    [ ] 이해관계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당사자                    [ ] 이해관계자

### 작성요령

⑥에는 육상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를 적습니다.

⑦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외의 육상처리계획을 적습니다.

⑧에는 이 검토서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중 제1쪽)

제 호

배출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항목 (예) 일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	용도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처리용, 기타
시료	채취장소 (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 함수율

검사항목	제 1기준 (mg/kg, 건중량)	제 2기준 (mg/kg, 건중량)	검사 결과 (mg/kg, 건중량)	판정 결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위의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어류·패류의 젓갈 또는 그 폐기물, 수산물 가공잔재물, 어장정화·정비 시 수거되는 조개껍데기 등)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소: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중 제2쪽)

제 호		
배출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항목 (예) 일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	용도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시료	채취장소 (예) 호퍼, 압롤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 함수율

검사항목	제1기준 (mg/kg, 건중량)	제2기준 (mg/kg, 건중량)	검사 결과 (mg/kg, 건중량)	판정 결과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나프탈렌	4	0.8		
페난트렌	5	1		
안트라센	4	0.8		
벤조(a)피렌	4.5	0.9		
플루오란텐	10	2.5		
벤조(a)안트라센	5	1		
벤조(b)플루오란텐	4	0.8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위의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폐기물(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소: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중 제3쪽)

제 호

배출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항목 (예) 일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	용도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시료	채취장소 (예) 호퍼, 압물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 함수율

검사항목	제1기준 (mg/kg, 건중량)	제2기준 (mg/kg, 건중량)	검사 결과 (mg/kg, 건중량)	판정 결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0.180	0.023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위의 검사 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준설토사)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소:

(전화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립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장소				
폐기물의 종류				
면적 및 처리량			m <sup>2</sup>	m <sup>3</sup>
목적				
처리 방법				
허가기간				
폐기물의 누출 방지 및 사후관리계획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 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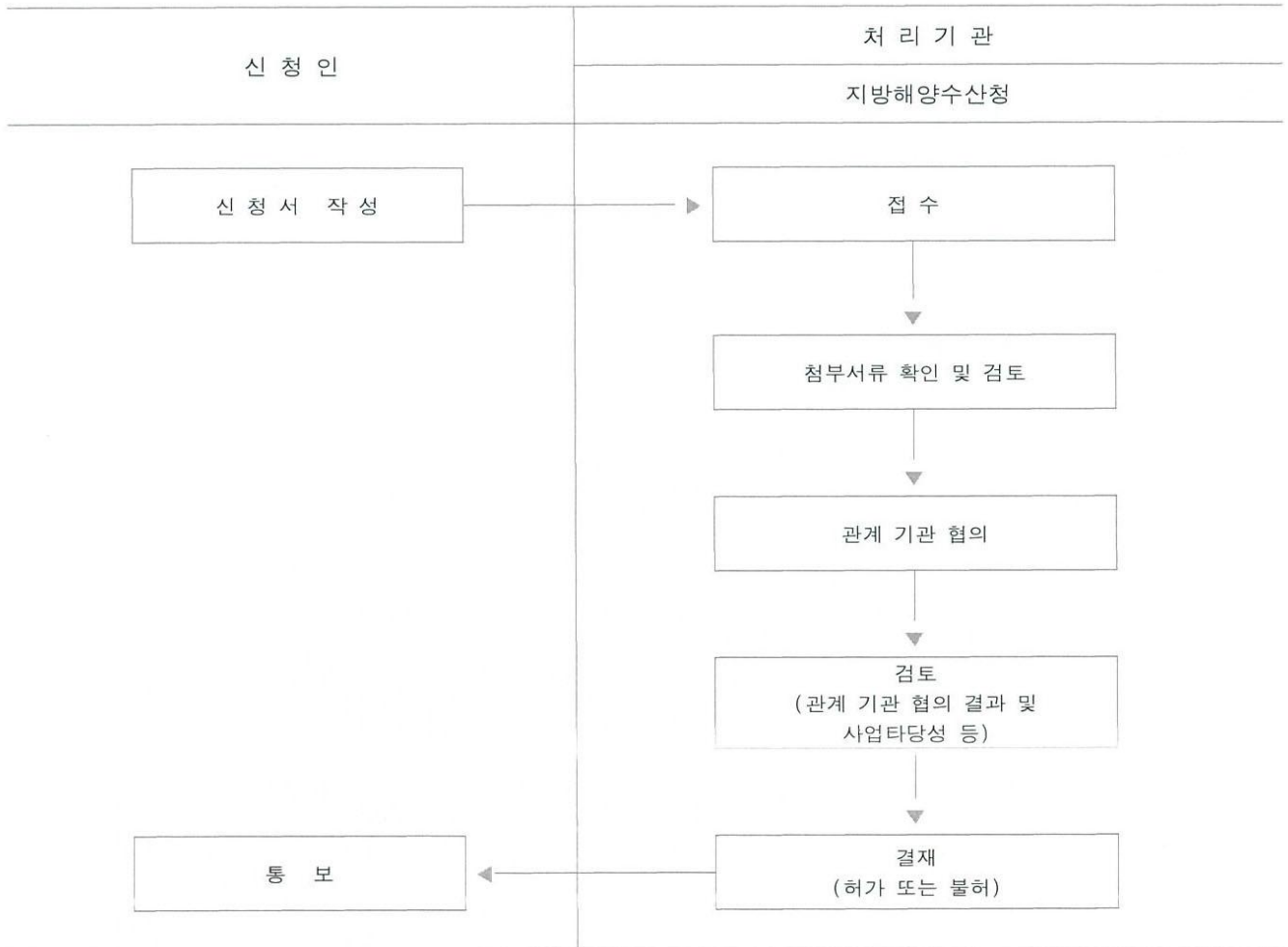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 폐기물 고립 허가증

-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고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small>※ 법인·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small>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_____ )		
저장 목적				
저장 위치				
저장 면적 및 저장량	m <sup>2</sup>		m <sup>3</sup>	
저장기간				
저장 방법				
누출 방지 및 사후관리 계획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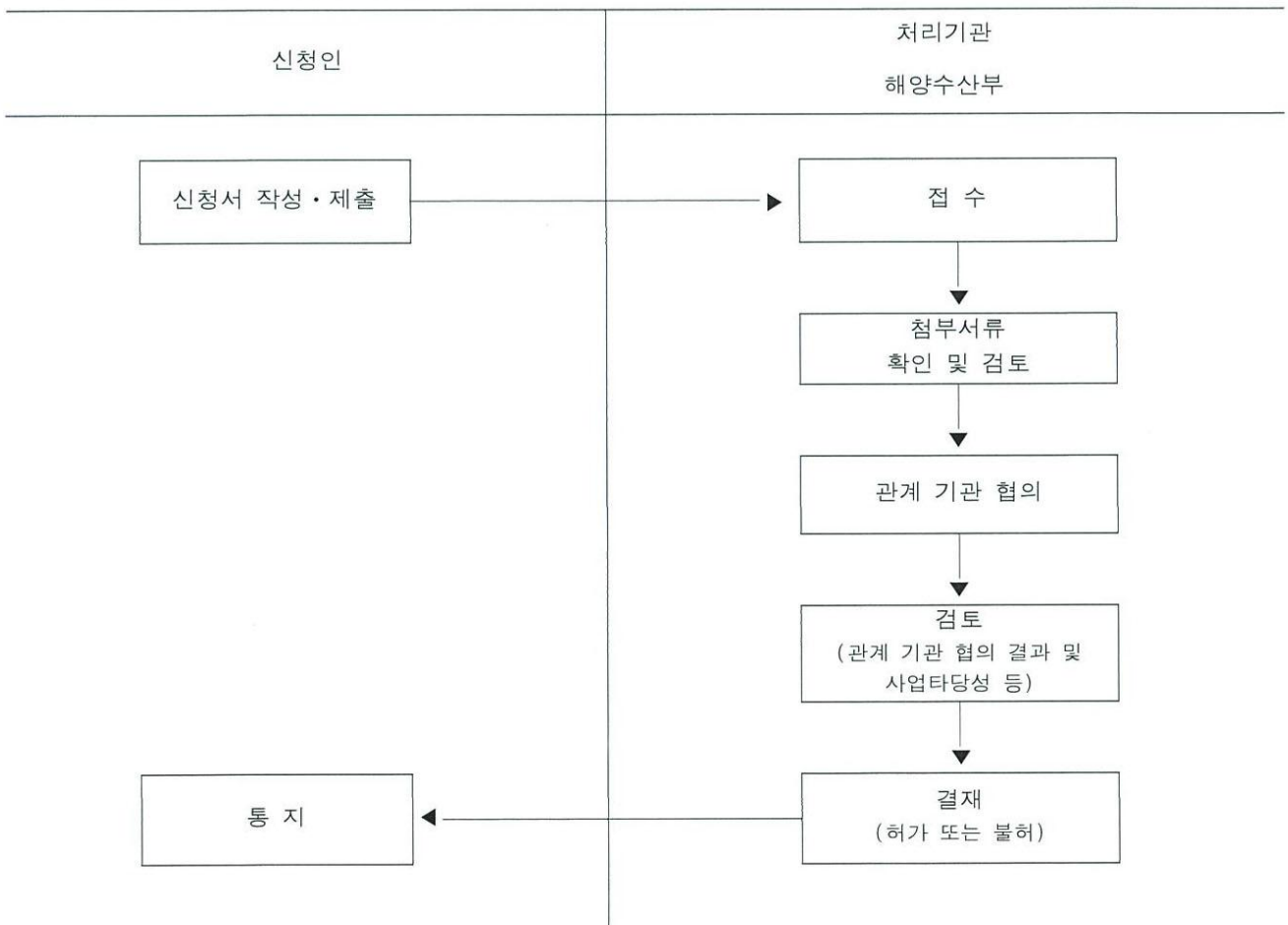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계획서 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현황 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저장 방법 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모니터링 계획 바. 해양지중저장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사.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사업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준설물질의 활용 최초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small>※ 법인·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small>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대상물질의 종류		
대상물질의 양	kg	m <sup>3</sup>
활용 용도		
활용 계획		
사업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의 활용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작성방법

1. 활용 용도란에는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2. 사업기간란에는 준설물질 활용사업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기간을 작성합니다.



(뒤쪽)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초등록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li> <li>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li> <li>다.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li> <li>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li> <li>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 력에 관한 설명서 1부</li> <li>바.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li> <li>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ul> </li> <li>2. 변경등록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li> <li>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ol>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사업자등록증</li> <li>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li> <li>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b>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b>		등록연월일 .
등록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배출 폐기물	폐기물 종류		
	적재지		(주된 적재지: )
	배출예정 해역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	m <sup>3</sup>
폐기물 운반선	구분	주운반선	부운반선
	선박명		
	선박번호		
	선적항		
	총톤수		
	선질		
	항해가능구역		
	배출 관련 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배출정보 저장장치		
	그 밖의 주요 설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 1.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3. 주소(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 1.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3. 주소(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법 인 명**

우편번호/ 주소/  
과명/ 과장/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전자우편)/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 해양배출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폐기물의 종류	배출방법	배출량	예정부담금	비고
1	젓갈류 폐기물	확산식			
2	수산물 가공잔재물(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제외)	확산식			
3	원료성 동식물 폐기물	확산식			
4	수산물 가공잔재물(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집중식			
5	준설토사	집중식			

붙임: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폐기물인계 · 인수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폐기물 해양 배출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위탁장소	
	폐기물 종류	위탁량 m <sup>3</sup> (kg)
	폐기물의 성질 · 상태 [ ] 고체상태, [ ] 액체상태	
	배출업자	

운반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차량종류	차량번호
	수집 · 운반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폐기물 해양 배출 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저장시설	
	출항지	
	배출해역	배출방법 [ ] 확산식, [ ] 집중식

	배 출 자	운 반 자	배 출 업 자
확인	직위:	직위:	직위: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인계 · 인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배출업자)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배출자 및 배출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 배출자, 운반자 및 배출업자는 폐기물의 배출위탁 · 운반 및 배출 시마다 상대방의 기재내용과 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직접 확인한 후 자기가 적어야 할 사항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3. '위탁장소'란에는 폐기물을 위탁할 당시에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던 장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란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5. '수집 · 운반차량증 번호'란에는 시 · 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발급한 수집 · 운반차량증의 번호를 적습니다.
6. '저장시설'란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을 적습니다. 다만, 운반선에 직접 적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습니다.
7. '배출해역'란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해역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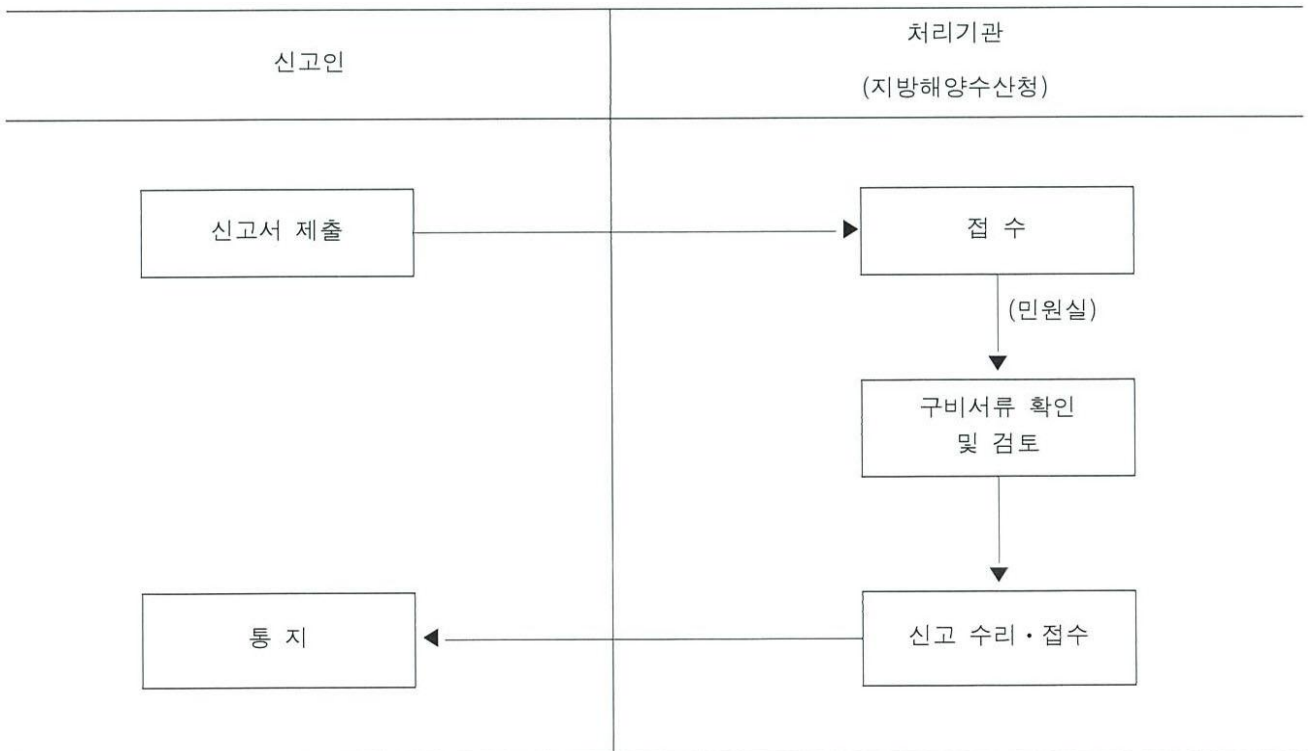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 전문기관 지정서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  일반항목 검사  생태독성시험항목 검사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3.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4. 실험실 소재지:

5. 기술인력 현황:

위 기관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의 절차,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의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건중량을 기준으로 해양배출 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집중식 처리방법 또는 확산식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

나.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직접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을 수거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폐기물 재활용의 우선적 고려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 등을 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수거 기간,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및 정화명령 등(안 제20조 및 제21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해수의 흐름 개선, 오염도 저감을 위한 개선제 투입 등을 정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정화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화명령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정화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안 제25조 및 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종류별로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운반선, 수거선 등 선박·설비 및 장비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등록을 해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마.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33조 및 별표 6)

폐기물의 검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전문기관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업무 수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 ○ 환경부령 제89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886호(2020. 11. 27.)에 게재된 “환경부령 제89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다목6)”을 “제2호다목8)”로 하고, <u>같은 호에</u>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제2호다목6)”을 “제2호다목8)”로 하고, <u>같은 표 제2호에</u>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보 제19886호 제54쪽 별표 21

## 국 무 총 리 훈 령

### ●국무총리훈령 제701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인

###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01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금융그룹 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고 시

### ●법무부고시제2020-4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갑출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